
토 론

토 론 내 용

사 회 : 진형혜(변호사 / 서울 제1중재부 중재위원)

토론자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광엽(YTN 경제부장)

최진웅(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성옥(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토 론 내 용

○ 윤여진 (토론자)

저희 언론인권센터도 언론보도 피해구제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사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보도피해자들이나 댓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포장해서 수용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유포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뉴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적 극단화와 혐오를 조장하며 사회의 유대를 잠식하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지금이 소셜 미디어 시대, 인터넷 기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만적 의도를 가진다면 상당부분 정치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가짜뉴스의 규제논의 역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 이 문제에만 집중하여 법적 규제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무시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다른 여러 지점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 단체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민간업체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강화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세훈 교수님이 소개하신 가짜뉴스 대응방안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교육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뉴스에 대한 분별력, 비판적 이해와 수용,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미

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재활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렇게 공개된 정보를 언론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의 관리 뿐 아니라 시민의 관심사별로 분류해서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심의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도 팩트체크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의 개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이광엽 (토론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어서, 가짜뉴스의 해법으로 과도한 법적 규제를 앞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부 업무를 오래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제재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법적 제도가 추가된다면 실질적으로 언론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완벽하게 기사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 언론을 옥죄는 규제가 추가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알림표시의무같은 것을 도입한다면 언론사 기사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기사가 일방적으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처분까지 도입된다면 과잉규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를 찾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절차 이외에도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

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권위있는 언론사를 Fake news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법적 규제 장치를 잘못 만들면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체적인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국립미디어교육센터인 ‘클레미’가 주목받고 있는데,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뉴스의 옥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제작교육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진웅 (토론자)

현재 가짜뉴스 게시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고, 신문사나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는 없고, 가짜뉴스가 SNS나 포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우 현행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황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추가로 정보통신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게시자 처벌 외에도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정보를 즉각 삭제할 법적 의무를 추가하여 가짜뉴스를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입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만큼 가짜뉴스의 피해가 큰지,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작용이 있는지, 처벌대상 확대에 의한 부작용이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이 가짜뉴스를 규제할 인센티브가 없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적 규제를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문법상 등록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에서 언론사를 사칭하여 불법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게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가짜뉴스 생산자가 아니라 의도치 않은 유포행위자에게 적용될 때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통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신속하게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사업자입니다.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해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유통되는 막대한 가짜뉴스를 현실적으로 모두 삭제할 수 없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SNS중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관할권이 없어 처벌의 효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국내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될 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상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 윤성옥 (토론자)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제한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은 가짜뉴스가 뉴스의 형식을 빌려서 작성되었다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신문법이나 방송법상의 보도에 대한 정의가 언론진흥정책에서는 활용 가능할 수 있으나, 규제대상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FCC나 국내 규제기관이 뉴스 장르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유사보도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팩트 위주의 전통적인 뉴스의 영향력이 정말로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층일수록 단순히 뉴스가 전달하는 팩트보다는 팩트를 재해석하거나 설명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뉴스 형식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은 뉴스를 소비하면서 재창작합니다. 뉴스의 팩트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재가공하거나 패러디하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자들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알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뉴스 주체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언론인은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직종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고용인력 등으로 뉴스주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신문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널리스트의 개념 안에 영향력 있는 블로거까지 포함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생각해 보면 과연 기성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상업적 홍보와 관련된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없는 순결한 세상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두렵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민주주의 사회에

서는 가짜뉴스가 유통되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인신공양설 같은 것은 분명히 허위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금지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상업적 표현물에 비하여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견이나 논평, 유머, 풍자, 패러디의 영역은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더 이상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해결하려면 좋은 뉴스에 대한 진흥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디어 내용규제는 하나의 규제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고 가짜뉴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기술적 규제, 미디어 교육 등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저는 발제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 언론 환경이 많은 기사를 단시간에 내보내다 보니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식의 보도가 결국 언론 스스로를 방관자의 자리로 내몰아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이것이 가짜뉴스의 범람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만 조직과 규범, 체계를 갖춘 언론기관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낼 것인데, 그 개인을 규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언론이나 온라인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규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정세훈 교수님께 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 정세훈 (발제자)

사실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어디까지인가, 언론의 기사를 전달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합의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책무를 요구하지만 언론 기사가 보도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그에 걸맞는 책무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 시장주의적 입장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사업자, 모바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지, 법적 규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를 강요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여진 이사님과 같이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하고, 최진웅 조사관님의 입장과 같이 국내사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시장논리에 따르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뉴스라는 것에는 일정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윤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뉴스 소비자들은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변형하여 팟캐스트 방송과 같이 다른 형태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가짜뉴스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해야 할지가 아직 분명치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진웅 (토론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 규제의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가짜뉴스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찌라시라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를 사칭하여 유포되는 정보는 우리가 믿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를 사칭하는 뉴스만을 가짜뉴스로 정의하면 입법적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여진 (토론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게재된 글이 기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포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시장이며,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이 자율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언론사, 포털사업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조사관)

정세훈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소개하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흥미가 갑니다. 일반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거나 시민교육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단체나 기관, 교육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정세훈 (발제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도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기관의 교육과정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통합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효과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어떤 방법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를 평가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면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가르쳤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전병길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 시스템 개발, 법 적용 뿐 아니라 각종 캠페인을 통한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상업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생산 유통된다고 생각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고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인터넷 언론이 제도권에 있지만 간혹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규제가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제도권 밖의 집단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외에, 언론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세훈 (발제자)

인터넷언론 입장에서는 가짜뉴스 자율규제의 동기가 부족하고, 기술구현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규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자율적 규제가 어렵고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면,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팩트체크나 자율규제를 위한 기술구현을 위해서는 비용이 가장 큰 난관이 됩니다. 이 비용이 사업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비용이라는 합의가 있다면 공적 자금의 투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성옥 (토론자)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할 때 듣는 종합교통정보 같은 것이 뉴스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토크쇼를 뉴스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예능프로그램을 반론이나 정정보도의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올리는 정보는 뉴스로 보기는 어렵고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언론의 자율규제나 언론사에 대한 진흥, 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

론사 사칭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등록된 언론사를 표시하는 인증제를 권장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유도하는 등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짜 뉴스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웅 (토론자)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정부가 신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고, 검증되지 않는 보도도 많습니다. 자율규제를 실천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기금 지원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를 고려할 때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항상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시간이 듭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형혜 (사회자)

황용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비슷한 취지의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각 법률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만한 동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황용석 (발제자)

한국에는 매체법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규율대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시장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언론사가 일정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매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짜 뉴스를 저널리즘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제 컨퍼런스에서 구글 출신 발

표자는 Fake News라는 표현을 써서 정치인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Mis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Fake News라는 것은 아주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KISO, 과기부, 방송통신위, 문화부, 미래부 각 계에서 가짜뉴스 관련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기술을 인공지능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계획이 나와서 내년에 3개 팀에 30억씩 R&D 투자가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과도할 정도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원입법안도 성과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서는 크로스체크에 대해 펀딩을 하고, AFP를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도 협업형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널리즘 팩트체크와 관련한 150개 단체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정보 유통에 있어 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롭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매개했다는 것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규제조항들을 만드는 것은 각 부처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비스 교수는 우리가 아무리 팩트체크를 해도 그 팩트체크가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힘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 사안에 대해 더 폭넓은 대화의 모델을 만들어 상호신뢰의 검증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법안분석을 해 보면서 이것이 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통해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병선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가짜뉴스를 사회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가짜뉴스는 뉴스가 아니므로 미디어나 저널리즘의 관련 법률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돈을 내지 않고 유통을 시킨 것으로 보아 유통관련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뉴스가 아닌 것을 언론관계법에서 처리할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는 뉴스도, 저널리즘도 아니고 현재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이나 뉴욕타임즈를 가짜뉴스로 지칭하여 착시현상이 생겼는데, 인터넷매체를 포함한 우리 저널리즘은 가짜뉴스에 좌지우지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도 않고, 발생하는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존재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의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저널리즘의 왜곡된 보도가 거의 허위사실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진형혜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보다 수준 높은 기사와 그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입법은 오히려 가짜뉴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 시점에 가짜뉴스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유익했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